

의안번호	제736호
의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360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11월 2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36

제출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재보호법 2개 분야(예능, 기능)→ 7개 분야 확대(안 제2조)
- 문화재보호법은 “원형 유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3조)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8조)
- 도무형문화재 및 긴급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안 제19조, 제20조)
-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안 제21조~제23조)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과 해제(안 제24조~제28조)
- 도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제30조)
-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도무형문화재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6조)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전승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 관습 등
-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보유자 중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도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조(설치)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제6조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도무형문화재(제19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명예보유자와 전수장학생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 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 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등의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무형문화재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제19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제2조의 무형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를 “도무형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을 “도지사”로 본다.
-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문화재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 배점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

이 높아진 경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상당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기술적 연구 또는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제1항에 따른 도급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20조에 따른 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도지사가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또는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가.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 다.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 나.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 다.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 기준, 배점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 가능성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명예보유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의 신청이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도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④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

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22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9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10.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장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제29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승자 현황
4.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 및 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승자 등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 및 도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조사 및 기록화)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은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신고 사항)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33조(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도지사는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문화재의 종목을 미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 등에 소질이 있는 경우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34조에 따른 이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능·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 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⑦ 도지사는 공개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 ⑧ 도지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7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9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20조에 따른 도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4조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제25조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8조(포상)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23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의 해제
3. 제28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의 해제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는 제22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인정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은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제4조(무형문화재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지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

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 · 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 · 전시 ·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 · 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 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 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수교육대학의 선정·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시 · 도무형문화재

제31조(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 ·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 · 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 ·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 · 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시 ·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 ·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시 ·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사는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 · 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 · 도무형문화재 또는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 ·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 사항)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 ·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2.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3.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4. 시 ·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제35조(준용규정) 시 · 도무형문화재 및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 · 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 ·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 · 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 ·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 ·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 · 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 · 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 · 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창업 · 제작 · 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 · 제작 · 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 ·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

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은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별칙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별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 · 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 ·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지정기준	비고
<p>1. 국가무형문화재는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지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p> <p>나. 한국문화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라. 제작 기법·기술 및 관련 지식이 전통기술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p> <p>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p> <p>2. 국가무형문화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p> <p>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p> <p>나. 공예, 건축,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p> <p>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p> <p>라.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p> <p>마.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p> <p>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p> <p>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p>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효율적인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지정분야 확대에 따른 전수활동비 등 지원대상 소폭 증가 전망
 - 제정 전 :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개 분야(기능·예능)
 - 제정 후 : 2개 분야 → 7개 분야로 지정분야 확대

3. 관련조문

- 안 제25조(명예보유자의 인정)제4항
 - 도지사는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33조(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제3항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 및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을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36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제2항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 및 공개행사 등 경비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제정전인 2017년 기준(27건 548,600천원) 향후 5년간 매년 3%씩(1건 내외)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를 실시함

※ 5년간 지정 현황 : '12. 무형 제26호 석암제 시조창, '13. 무형 제27호 칠장

- 다. 추계 결과 : '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912,59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50%, 시·군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출	2,912,590	548,600	565,058	582,009	599,470	617,453
전승지원	2,373,183	447,000	460,410	474,222	488,449	503,102
공개행사 지원	380,133	71,600	73,748	75,960	78,239	80,586
합동 공개행사	159,274	30,000	30,900	31,827	32,782	33,765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지 출	도비	274,300	282,529	291,005	299,735	308,727	1,456,296
	시군비	274,300	282,529	291,004	299,735	308,726	1,456,294
	소계	548,600	565,058	582,009	599,470	617,453	2,912,590

※ 전승지원금 기준(월) : 보유자·보유단체 각 900천원, 전수조교 400천원, 장학생 150천원

공개행사 기준(년) : 보유단체 4,000천원, 기능 1,800천원, 예능 2,000천원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